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79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 박성준 • 박홍근 • 박홍배

조계원 • 노종면 • 허종식

정성호 · 김성회 · 강유정

문진석 • 윤종군 • 민병덕

박희승 · 염태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녀의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 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3제1항 본문"을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 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 -----제18조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 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 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산 휴가,-----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 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 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 조의3제1항 본문 또는 「근로 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 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항 전단-----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 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의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